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512714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2. 23.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85,295,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6.부터 2022.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2. 5. 24.까지는 연 6.2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C은 216,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을,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9. 9. 30. 피고 C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D(도로명 주소 : E) 제4층 F호 철근콘크리트조 84.9823㎡를 임대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한 2021. 10. 24.로 정해 임차하였다.

나. 피고 B은 2019. 10. 4.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G, 보험가입금액을 198,000,000원, 보험기간을 2019. 10. 25.부터 2021. 10. 25.까지로 정해 개인금융신용보험약정을 체결하면서, G이 대출금 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한 보험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8. 7. 1. 이후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나. 원고는 2019. 10. 4.경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을 발행하였고, 피고 B은 2019. 10. 4.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216,000,000원으로 하여 G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같은 해 10. 14.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같은 해 10. 25. G으로부터 18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21. 10. 25.로 정해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2022. 4. 15. 위 보험계약에 따라 G에게 보험금으로 위 피고의 대출원리금 185,295,057원을 지급하였고, G은 그 무렵 위 근질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피고 C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8-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185,295,057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2. 4. 16.부터 30일째가 되는 2022. 5. 15.까지는 연 6%의 약정연체이율,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22. 5. 24.까지는 연 9%의 약정연체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2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피고 B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G을 대위하여 위 대출금 채권과 위 근질권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질권이 설정된 216,000,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위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2021년 4월경 보증금 중 6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216,000,000원을 한도로 G에게 근질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 C에게 이를 통지한 이상 피고 C은 위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피고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질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 박지원